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가공시설 위생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불법 조업감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항만순찰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며, 이와 관련된 인력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 ~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2호, 제13호 및 제59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호 중 “검역·방역”을 “검역·방역 제도의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

9.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1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11.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제55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597”을 “589”로 하고, 일반직 계 “593”을 “5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6”을 “56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911”을 “2,930”로 하고, 일반직 계 “2,800”을 “2,8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77”을 “2,796”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6조 개정규정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이체하는 정원 8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에 대한 사항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에 두는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에 대한 사항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3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	1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5조 관련)

8. 제55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일반직 계	4
5급 이하	4

현행	개정안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육성 13의2. ~ 58. (생략) 59.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협력 6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2. 수산생물 방역·검역 제도의 운영 63. ~ 81. (생략)	제11조(수산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의2. ~ 5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3. ~ 81.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산물 검역·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2. ~ 7. (생략)	제16조(직무) ----- ----- -----. 1. ----- 검역·방역 제도의 운영 및 관리----- 2. ~ 7.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97	589	-8
일반직 계	593	585	-8
3급 또는 4급 이하	576	568	-8

<신 설>	8.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 리·육성
<신 설>	9.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신 설>	1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 무
<신 설>	11.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 한 업무
제55조(한시정원) ① ~ ⑩ (생 략)	제55조(한시정원) ① ~ ⑩ (현행 과 같음)
<신 설>	⑪ 해양사고 심판의 원활한 조 사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3]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911</u>	• <u>2,930</u>	+19
일반직 계	• <u>2,800</u>	• <u>2,819</u>	+19
3급 또는 4급 이하	• <u>2,777</u>	• <u>2,796</u>	+1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